

<p>제2023-85호 2023년 10월 10일(화)</p>	<p>시  보</p> <p>여수시</p>	<p>시 정 지 표</p> <p>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3-452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고시(신덕동 산51번지 8호) 1
- 여수시 고시 제2023-453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고시(화양면 안포리 1824) 2
- 여수시 고시 제2023-45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3-45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813호 반월통로박스 내 CCTV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5
- 여수시 공고 제2023-2814호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9
- 여수시 공고 제2023-2816호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0
- 여수시 공고 제2023-2817호 라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5차 추가 신청 안내 공고 20

회 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여 수 시 장

- 허가번호: 제2020-00071호
- 허가일자: 2023년 10월 4일
-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유)광개토건설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55, 2층 (화장동)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장소	신덕동 산51-8	변경 없음
면적	139㎡	변경 없음
목적	자재야적장 진출입로	변경 없음
기간	2020-08-13 ~ 2023-08-12	2020-08-13 ~ 2028-08-12
조건	별첨	변경 없음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여 수 시 장

- 허가번호: 제2018-00026호
- 허가일자: 2023년 10월 5일
-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이미영
 -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95, 106동 201호 (조례동, 송촌프라임)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장소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1824	변경 없음
면적	32㎡	변경 없음
목적	동식물 관련시설(양식장) 진출입로	변경 없음
기간	2018-06-12 ~ 2023-06-11	2018-06-12 ~ 2028-06-11
조건	별첨	조건부 변경허가 (착공 전까지 원상회복 이행 후 점용·사용 가능)

여수시 고시 제2023-45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허가번호 (최초허가일) (변경허가일)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19-066 (19. 7. 10.) (23. 9. 22.)	2023. 10. 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백초어촌계 (이영춘)	'23. 10. 6.	승인일로 부터 1개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813-10번지 지선 공유수면	부잔교 설치

2023. 10. 6.

여 수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6.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141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824 (봉계동)	20231006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반월통로박스 내 CCTV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반월통로박스 시설물 관리 및 집중호우 시 침수사고 예방 등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CCTV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내용 : 반월통로박스 CCTV 카메라 설치
2. 설치목적 : 시설물 관리 및 침수사고 예방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 반월통로박스 진·출입구(여수시 여천동 907-36번지 일원)
5. 행정예고기간 : 2023. 10. . ~ 2022. 6. 13.(21일간)
6.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청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1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여수시장 (참조 : 도로시설관리과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팩 스 : 061)659-5862(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eosu.go.kr> (바탕화면 → 고시/공고)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설치장소]



붙임 :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 붙임 1 】

반월통로박스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반월통로박스 CCTV 카메라 설치공사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의 견		
반월통로박스 CCTV 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3-2814호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2023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채용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여 수 시 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1명

○ 응시번호 : 1

2 신규채용 등록

가. 등록일시 : 2023. 10. 10.(화) 18:00까지

나. 등 록 처 :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농정팀(여수시 주동1길 32)

3 등록 시 유의사항

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에 차질
없이 등록하여야 함.

나. 지정된 기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농업정책과(농정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659-4404)

여수시 공고 제2023-2816호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 8. 10.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자체가 제외되어 있어, 우리시 시행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조례 적용 예외 조항(시 소속 직원 대상, 학생 대상, 50만원 이하 공모전)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름

○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모담당관 지정(안 제5조)

-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함
-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

-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시 누리집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
 -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시 누리집 등 다양한 응모 방법 제공
-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안 제8조)
 -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설치
-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제10조)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분야별 설치 심사위원회 및 최고 시상 금액 100만원 이하 공모전의 경우 위원장 1명 포함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공모전의 심의·의결을 완료한 후 자동 해산
-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안 제11조 ~ 제13조)
 -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항 규정
- 공모전의 심사(안 제 14조)
 - 수상후보작에 대한 부정행위를 검증해야 함(시 누리집 등에 10일 이상 공개 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 부정행위 검증 완료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 결정
- 수상작의 공개 및 수상작 결정의 취소(안 제 15조, 제16조)
 -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상작 공개 및 비공개 가능 사항 규정
 - 결정 후 부정행위 적발 시 상금 등 반환에 관련 사항 규정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 2023. 10. 10. ~ 10. 30.(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라. 제출기관 : 여수시장(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 팩 스 : 061-659-5813
- 전자메일 : dlvr12@korea.kr

6.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061-659-3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응모”란 여수시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상금·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5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시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공모전의 공고)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여수시 누리집 및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응모)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시 누리집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응모자에게 제5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모전인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심의·의결을 완료한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심사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사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심사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 국

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수상작의 공개) ① 시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비용 일부 지원을 위한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아직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어선의 관리자는 2023년 10월 25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10.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 사 업 비 : 1,838백만원(도비 735^{40%}, 시비 1,103^{60%})
- 사 업 량 : 20,500,000리터(ℓ)
- 지원대상 : 도내 어업용 면세유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선, 양식장 관리선, 양식장·수산종자생산장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동안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
 - ※ 근해어선의 경우 선적항이 도내 항이나 소유자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2023. 1. 1. ~ 2. 28.까지 면세유 수급 어가에 올해 1분기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0% 수준 지원
 - ※ 예산 상황에 따라 그 전 기간도 소급적용 가능
- 지원단가 : 유종별 리터(ℓ)당 정액지원
(경유 156원, 휘발유 32원, 중유 89원)

※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 등 변경 가능

2. 신청기간 : 2023. 10. 10. ~ 10. 25.

3. 신청장소(방문접수) : 수산경영과(국동 임시별관) 또는 읍·면·동사무소

4. 신청대상 : 면세유 지원사업 미신청 어선 (이미 신청한 어선은 신청할 필요 없음)

5.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관리선 지정증(양식어업 면허증)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면세유류카드

6. 사업 추진절차



7. 문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김재선(☎659-3918)

붙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